

의안번호	제733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안치영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

(안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안치영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오영탁,
조성태, 황영호

1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이 개정(2020. 3. 31. 법률 제171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. 7. 1. 시행된 것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.
- 충청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,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향경우회를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로 규정함(안 제2조)
-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,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,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등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, 경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

나. 관련부서 :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/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제 호

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경우회”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
4.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 사업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감독) 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

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.

제5조(준용) 보조금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중복지원 금지)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7조(포상) 도지사는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(大韓民國在鄉警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30.>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 [전문개정 2010. 7. 23.]

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1. 사업개요
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,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관련조문

- 제3조(지원사업 등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1.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 2.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
 3.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
 4. 도민에 대한 봉사과 공익 증진 사업
 5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비용추계 제외 사유

- 첨부제외 관련규정
 - －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 제1호
- 재향경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이 규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제외사유에 해당함.